

제152호

행 정 명 령

**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인프라 복구 관련 조항의 일시 정지**

2016년 1월 3일, 본인은 겨울 악천후가 뉴욕주 전역의 주민, 특히 노숙자들의 생명, 건강 및 안전에 제기하는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51호를 2015년 1월 5일부로 발령하였습니다;

이 비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 기관들은 겨울 악천후로부터 노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준비시키며 그러한 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;

**이제, 그러므로, 본인 ANDREW M. CUOMO**, 뉴욕주 지사는,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부법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추가 고지시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시킵니다:

공공건축법 제9조 제(2) 및 (4)항, 총무실장이 비상 계약 체결을 승인 및/또는 계약에 설계와 시공 용역을 통합 및/또는 60만 달러 이상 임계치에서 필요시 그러한 계약과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주 재정법 제112조, 주 헌법 제V조 제1항과 일치하는 범위에서, 그리고 공공건축법 제3조에 의거 주 작업의 이전 및 지원을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스를 체결하기 위해, 공공건축법 제9조에 의거 비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, 주 재정법 제136-a조에 의거 전문 용역을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, 그리고 주 재정법 제163조에 의거 상품, 용역, 기술 및 자재를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총무실장, 정신건강실장, 발달장애인실장, 아동가족실장, 임시장애지원실장, 또는 기타 주 기관, 위원회, 청 또는 공사의 장 또는 CEO가 주 계약에 추가 공사, 부지 및 시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주 재정법 제136-a조, 총무실장이 한 계약에 설계와 시공 용역을 통합 및/또는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주 재정법 제163조 및 경제개발법 제4-C조, 총무실장, 정신건강실장, 발달장애인실장, 아동가족실장, 임시장애지원실장, 또는 기타 주 기관, 위원회, 청 또는 공사의 장 또는 CEO가 필요한 상품, 용역,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도내;

1968년 법률(시설개발공단법)의 제359장, 숙소청장이 정신위생 시설, 보건 시설, 지자체 건물 또는 기타 승인된 시설을 설계, 시공, 취득, 재건축, 재활 또는 개선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용역을 한 계약에 통합한 계약을 포함한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1966년 법률 제782장, 1975년 법률 제332장 및 교육법 제6281조, 숙소청장이 뉴욕시립대학을 위한 시설을 설계 또는 시공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용역을 한 계약에 통합한 계약을 포함한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1971년 법률 제892장, 숙소청장이 보건 시설을 설계 또는 시공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용역을 한 계약에 통합한 계약을 포함한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1972년 법률 제464장, 숙소청장이 커뮤니티칼리지 시설을 설계 또는 시공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용역을 한 계약에 통합한 계약을 포함한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거나, 필요한 상품, 용역,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공공청법 제1678, 1680, 2879, 2879-a조, 숙소청장이 시설을 설계 또는 시공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용역을 한 계약에 통합한 계약을 포함한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고 재난 비상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방 정부, 개인 및 기타 비주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환경보전법 제8조,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17의 파트 15 및 타이틀 6의 파트 617, 총무실장, 정신건강실장, 발달장애인실장, 아동가족실장, 임시장애지원실장, 또는 기타 주 기관, 위원회, 청 또는 공사의 장 또는 CEO가 구조물의 교체, 재활 또는 재건축을 위해 공사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주 재정법 제97-G조, 총무실장이 재난 비상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방 정부, 개인 및 기타 비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설계 및 시공 용역을 포함하여 음식, 용품, 용역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앙 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.

2015년 법률 제60장의 파트 F, 총무실장과 숙소청장이 규정된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계-시공 및 최상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도내.

모든 주 기관, 위원회, 청 및 공단은 하나 이상의 다른 주 기관, 위원회, 청 또는 공단에 동 주 기관, 위원회, 청 또는 공단이 각자의 기능과 의무 내에서 별도로 제공할 권능이 있는 편의, 용역, 활동, 또는 사업을 협조적으로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.

올버니시에서 본인 자필과 주 옥새로 이천일십육년  
일월 십이일에 발령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